

(시·군·구 공무원용)

2회 이상 위반기록란		교통법치행위 적발통보(보고)서 No. (연도)		계장 (팀장)	과장 (대장)	서장 (도지사)
회 경찰서(제주특별자치도) No.						
아래와 같이 전용차로통행,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및 주정차 위반운전자를 적발·출석 고지하였음을 통보(보고)합니다.						
출두	기 일	년 월 일 시 분까지				
	장 소	경찰서(민원봉사실)[자치경찰대]				
위반 행위의 요지	위반일시	년 월 일 시 분경		보관	☐ 운전면허증 ☐ 국제운전면허증 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검인 ☐ 기타	
	위반장소					
	적용법조	☐ 「도로교통법」 제15조 (전용차로통행위반) ☐ 「도로교통법」 제29조 (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위 반) ☐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(주정차금지위반) ☐ 「도로교통법」 제33조 (주차금지장소위반) ☐ 「도로교통법」 제34조 (주정차방법위반)				
위반자	성 명			생년월일		
	주 소					
	차 량	☐ 관 ☐ 영 ☐ 건설기계 시 제 호 ☐ 자 ☐ 외 ☐ 노면전차 도			차종	
	운전면허	☐ 대형 ☐ 보통 ☐ 소형 제 종 ☐ 건설기계 ☐ 특수 ☐ 원자 ☐ 국제 ☐ 노면전차			면허 번호	
	날 인	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인정 합니다. (서명 또는 인)				
년 월 일 단속공무원 (인) ○○ 경찰서장(제주특별자치도지사) 귀하						
조치						